

<별첨자료1> 이 대표의 실제 발언(회의록)

2021년도국감-국토교통제2반(2021년10월20일) 51

플러스 공공 합동 방식 11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기도에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방식만 가지고 이익이 있었다 시민들에게 이익을 봤다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지사님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민간개발보다 공공에서 훨씬 많이 한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설계자가 범인이다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폭을 소탕하는데 돈 나눠 쓴 행동대장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획하고 설계한 두목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두목이 제가 보기에는……

○박성민 위원 설계한 사람이 두목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두목이 제가 보기에는 돈 받은 사람입니다.

○박성민 위원 돈 나눈 사람은 공범이고 행동대원이고, 설계한 사람이 주범이고 설계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조응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위원님, 범죄를 설계한 사람이 범인 맞습니다. 그런데 총을 설계한 사람이 전범은 아닙니다. 비행기를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설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성민 위원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총 설계하고 비행기 설계하고 묻지 않았어요.

○진성준 위원 답변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박성민 위원 진성준 위원!

○반장 조응천 아니,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하 게 좀 내버려 두세요.

답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겁니다. 뭐냐?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도록 분양가상한제 폐지하고, 민간이 개발부담금 덜 내게 만들고, 또

수의계약 해서 택지 취득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 또 압력 넣어 가지고 LH가 이미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기시켜 가지고 개발이익을 민간이 갖게 한다가 가장 큰 국힘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 속에서 제가 최대치로 민간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설계를 한 것이고 이 민간이익 뭇 안에서 누가 이익을 가질 것인지, 누가 돈을 많이 낼 것인지,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 설계는 제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했는데 이 민간 영역에서 이 설계에 따라서 이익을 본 것은 잔돈 받으신 원유철 부인 이런 분이고 푼돈 받으신 광상도 의원 아들 이런 분들이고요.

앞으로 이 이익을 누군가가 또 나누게 될 텐데 나누게 될 사람들은 저하고 원수가 되다시피 한 게 그 개발사업자들인데, 개발사업권을 뺏겼으니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누군가 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줄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보다는 국힘에 가까운 쪽일 것 같습니다.

○반장 조응천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일찍이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이 싸고 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 제기가 날조됐다는 것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패널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패널 한번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첫 번째, 납득이 안 되는 토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주어가 왜 없습니까?

○김희국 위원 국민의힘에게 묻는다고? 답변할 게요, 질의해요.

○문진석 위원 의혹 제기했으니까요. 수의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지사님, 이 땅 수의계약한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식품연구원이 했습니다.

○문진석 위원 맞습니다. 이 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박성민 위원 문진석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을 지정해 주세요, 답변하게.

○반장 조응천 박성민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 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문진석 위원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사업자와 수익계약을 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 조작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요청해서 팔았는데 안 팔려 가지고 유찰이 몇 년 동안 되니까 수익계약한 겁니다.

○문진석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도 왜 주어가 없습니까?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金熙國 위원 식품연구원이 했지요.

○문진석 위원 아닙니다. 2014년 4월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金熙國 위원 식품연구원이 한 자료도 있어요!

○문진석 위원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이재명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金熙國 위원 우리가 대답할까요?

○문진석 위원 아니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주택으로 변경 특혜 제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 개발사업자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장기적인 임대수익을 피할 것인지 분양으로 단기수익을 벌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업체가 요청하는 해당 시가 도시계획심의위

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변경승인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의 의견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분양이익을 비교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비교하려면 임대수익과 분양이익을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특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행정에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에 몰두하다가 월요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소셜 신작과 함께 바로 이 사진을 꺼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익계약을 맺고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진석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이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

양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서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터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짜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반장 조응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김은혜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반장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지사님, 오후 질의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문제의 본질이 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셨던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다섯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공익사업, 앞으로는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 공공택지에는 공영개발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 특별법도 저는 80%까지, 심상정 의원님은 100%까지 지금 발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법률들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앞으로도 민관 합동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민간의 초과이익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귀속비율 상한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 놔야, 그것이 도시개발특별법이든 이런 법 제도를 갖춰 놔야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영개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공개발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민영개발을 할 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 협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협약의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고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50% 이상 상향을 해서 앞으로는 민영개발에서도 초과이익들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지사님께서

<별첨자료2> 국토부 공문 예시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 토 교 통 부

수신 성남시장

(경유)

제목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한국식품연구원)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은 「혁특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사무관

빅 지

과장

박 호

기획국장

전결 2014. 10. 1.
정 회

협조자

시행 종전부동산기획과-1308

접수

우 339-6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466

팩스번호 044-201-5652

/

t.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별첨자료3> 성남시 기자회견문 중 (2011. 8. 19.)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2011.8.19(금) 10:00

3층 한누리실

記 者 會 見 文

- 중앙정부 일방적 관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관련 -



城 南 市

－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 －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부지 매각 대상을 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했고,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는 원칙과 공공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 행태이며, 종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이속만 채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가 우리시 소재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6개부지)부지에 대해 2011년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42만제곱미터가 넘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다.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공공기관부지 이전 매각방침의 재고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

성남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시에서는 5개 공공기관 임직원 4천여명과 일가족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아래,

<별첨자료4> 2011년·2012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중 ‘직무유기’ 부분

국무총리 지시
제 2011 - 1 호

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2011. 1. 11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을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반면, 기관 특성상 내부 공직기강·윤리의식이 헤이할 우려
- 감사관 주재 관계관회의, 직원교육 및 사업·보조금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중점 실시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엄단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공직자의 정치권 유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례 발생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특히 고위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
-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하는 집단행동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 문서관리 및 보안점검 강화

- 정치권과 유착한 정책자료 유출 및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 문서의 고의적 유출에 대한 대인 감독 철저
- 취약시기 및 취약기관에 대한 문서 및 전자매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점검 강화

② 국정과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1)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독려

☐ 주요 국정과제 실태점검 계획수립 및 추진

- 성과창출 및 추진이 부진한 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 사항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

-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인적(직무유기·태만 등) 문책 또는 제도(계획자체의 부실 등) 보완 등 조치

- 형식적 점검을 탈피, 관련부서(과제·지시사항 담당)합동으로 실질적 성과 등을 점검하고 부진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11년 자체계획에 국정과제 등 점검계획을 포함,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총리실(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하고 연말평가에 반영

□ 관련부처 합동점검을 통한 성과제고 방안 강구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합동 점검을 활성화
- 주요과제에 대하여는 총리실 주관 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2) 적극적인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관용과 배려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불문 처리하여 적극적 업무추진을 유도하되,
- 무사안일, 눈치보기 등 직무태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특히, 고위직 및 산하 단체장 등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직무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관리 강화
- * 대민업무, 산하단체 등이 많은 기관에서는 특별점검반 편성·운영 등을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

□ 업무추진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내실있는 감찰

- 외부에 '보여 주기식' 요란한 감사·감찰'을 지양하고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는 활동으로 근무분위기 조성

2012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2012. 2



행 정 안 전 부
(감 사 관 실)

②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지원 강화

1)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태 점검·독려

- 주요 국정과제 중 성과창출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인적문책(직무유기·태만 등의 경우) 또는 시책·제도의 보완방안 마련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관련부서(시책담당 및 평가·감사담당 부서) 합동으로 집행실태 및 성과를 점검
 - ※ 부진·지연과제 중 다수부처 관련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총리실 유관 부서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2)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

-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점검방안을 마련·시행
 - 점검결과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문책 등 엄중 조치
- 외부에 '보여 주기식' 요란한 감사·감찰을 지양하고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는 활동으로 근무분위기 조성
 -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내실 있는 감사·감찰 활동 전개
-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 처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
 - 부처별 면책사례를 분기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